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 증권시장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3.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4.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또는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에서 그 운용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③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성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에서 그 운용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8조제5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개인에 한한다) 또는 65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상의 청약 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거나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는 행위

라.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마.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자금의 손실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68조제5항에 제2호의3 및 제1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자자(개인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2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이하 “핵심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핵심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핵심설명서에 갈음하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의7.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

제99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영업
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거나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에 해당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라.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마.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승
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취
소된다는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바.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
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3의3.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자자(개인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판

매하는 경우 제3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개인에 한한다)에게 핵심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핵심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험도”를 “종류를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운용대상의 위험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9조를 적용할 것

제109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라.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금전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마.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가 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전신탁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09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자자(개인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

위

나. 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개인에 한한다)에게 핵심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핵심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

제12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각각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발행기간이 무기한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제1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는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71조제2항제1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3호의7, 제121조제1항제4호·제5호, 제12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5항제13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3(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u> 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 증권시장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3.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4.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또는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에서 그 운용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③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성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에서 그 운용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

제53조(설명의무)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2. (생략)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려운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제53조(설명의무) <삭 제>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개인에 한한다) 또는 65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
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
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
니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
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
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
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상의 청약 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
안 투자자로부터 청약 또
는 주문의 집행을 승낙한
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
인, 녹취,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
고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거나 숙려기간이 경
과하기 이전에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는 행

<신 설>

위

라.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마.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의3.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

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
자자(개인에 한한다)를 대
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2
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
17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
함한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
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이하 “핵심
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
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
으로 핵심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합투자증권

3. ~ 13의6. (생략)

<신설>

14. (생략)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의 경우 핵심설명서에 갈음하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13의6. (현행과 같음)

13의7.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

14. (현행과 같음)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
니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
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
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
는 행위

다.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
안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녹
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
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하거나 숙
려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는 행위

라.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
안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
약의 체결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마.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
안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

<신 설>

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3의3.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에게 해당하지 아

니하는 일반투자자(개인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판매
하는 경우 제3호의2가목부
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행위

나. 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
17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
함한 개인에 한한다)에게
핵심설명서를 교부하지 아
니하는 행위. 다만, 제132
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핵심설명서의 수령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생략)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⑤ (생략)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
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
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

4. ~ 7. (현행과 같음)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⑦ (생략)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

1. (현행과 같음)

2. -----

----- 종류를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운용대상의 위험도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9조를 적용할 것

⑦ (현행과 같음)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신탁 재산을 노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노취하지 아니하거나 노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판매과정을 노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노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
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탁
재산을 운용하거나 숙려기
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
당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라.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
안 투자자에게 금전신탁계
약의 체결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마.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
안 투자자가 금전신탁계약
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 해당 금전신탁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

바. 나목에 따른 숙려기간 동
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
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
실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그 밖
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1의3.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고
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투자
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일반투자자(개인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판매
하는 경우 제1호의2가목부
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행위

나. 투자자(영 제10조제3항제
17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
함한 개인에 한한다)에게
핵심설명서를 교부하지 아
니하는 행위. 다만, 제132
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핵심설명서의 수령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파생결합증권</u>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5. ----- ----- ----- ----- 가. ----- -----

집합투자증권 <단서 신설>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
국 집합투자증권 <단서 신설>

② ~ ⑧ (생략)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
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
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 . 다만, 제3조의
3제1항에 따른 고난도금융
투자상품으로서 발행기간
이 무기한이 아닌 것은 제
외한다.

나. -----

----- . 다만, 제3
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발행기
간이 무기한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
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는 증권 기초자
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증권 기초자
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
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증권

	<u>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u>
제27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생략)	제27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 ----- ----- -----.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u>1억원</u>	1. ----- ----- ----- ----- ----- ----- <u>3억원</u>
2. 제1호 외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u>3억원</u>	2. ----- ----- -- <u>5억원</u>